



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

중요 공지

수하물의 식물에 대하여

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식물을 반입한 경우

벌칙의 대상

이 됩니다.

◆ 세관 검사 전에 반드시 식물 검역 카운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하물로 일본에 반입한 식물에 대해 다음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1 휴대품·별송품 신고서(세관신고서)에 식물 신고가 필요합니다.
- 2 묘목이나 종자 등의 종묘류, 절화, 채소, 과일, 콩, 쌀 등에는 수출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 증명서 첨부이 필요합니다.
- 3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은 폐기됩니다.

◆ 수입검사 절차에서 여권이나 탑승권 정보를 기록할 때는 검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.



불법으로 수입금지물품이나 식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처분되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(법인의 경우는 5,000만엔 이하)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식물을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를 체크!



검사 증명서에 대해서는 여기를 체크!

식물 방역소 주요 문의처

● 요코하마 식물방역소 045-211-7153

● 모지 식물방역소 093-321-2601

● 나고야 식물방역소 052-651-0112

● 나하 식물방역사무소 098-868-2850

● 고베 식물방역소 078-331-2386

MAFF
Ministry of Agriculture,
Forestry and Fisheries
農林水産省

식물의 병해충 침입 경계 중